

*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19가지 HS CODE 및 품명

HS CODE	품명
2505.90-1090	그 밖의 공업용 모래
2510.10-1000	천연인산칼슘(잘게 부수지 않은 것)
2510.20-1000	천연인산칼슘(잘게 부순 것)
2530.90-9099	그 밖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
2606.00-0000	알루미늄광과 그 정광
2612.10-0000	우라늄광과 그 정광
2612.20-0000	토륨광과 그 정광
2615.10-0000	지르코늄광과 그 정광
2621.90-0000	그 밖의 슬래그와 회
2815.20-0000	수산화칼륨
2825.60-2000	이산화지르코늄
2826.19-3090	플루오르화칼륨
2826.90-9000	그 밖의 플루오르화합물
2839.90-1000	규산지르코늄
2844.30-9000	그 밖의 우라늄
2918.15-1090	그 밖의 시트르산염
3104.20-0000	염화칼륨
3824.99-9090	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
6815.99-0000	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

1. 2505.90-109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2. 2510.10-1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3. 2510.20-1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4. 2530.90-9099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5. 2606.0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6. 2612.1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7. 2612.2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8. 2615.1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9. 2621.9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0. 2815.2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1. 2825.60-2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2. 2826.19-309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3. 2826.90-9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4. 2839.90-1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5. 2844.30-9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6. 2918.15-109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7. 3104.20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8. 3824.99-909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벵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벵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벵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

19. 6815.99-0000

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원료물질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1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1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, 그 연간 취급량이 100,000베크렐(Bq)를 초과하는 물질)
- 공정부산물(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,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(g)당 5베크렐(Bq),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(g)당 0.5베크렐(Bq)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)